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3월 11일

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이 관 응

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·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19개 통·리 증설에 따른 통·리장 19명 증원(안 별표)
 - 당초 : 667개 통·리장(통장 485, 리장 182)
 - 변경 : 686개 통·리장(통장 486, 리장 200)
 - 선산 1, 고아 1, 산동 16, 도량 1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통리 증감에 따른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경 자

○ 본 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개정의 후속 조치로 19개 통·리 증설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667명에서 686명으로 19명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,
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최일선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